

비씨카드 가맹점 특약서

(원격지 구매전용 가맹점용)

비씨카드 주식회사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_____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간에 비씨카드 가맹점 계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특약한다.

제 1 조 (목적)

이 특약의 목적은 "갑"과 "을"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가맹점 약관상의 내용 일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"갑" 과 "을"의 계약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히 처리함에 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- ① 원격지구매시스템 : 비씨카드(회원사)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로 물품을 결제 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 방문없이 인터넷상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
- ② 회원 :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회원 중 「원격지구매시스템」에 온라인 접속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「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」에 등록된 과제수행기관 사용자
- ③ 원격지구매가맹점 : 「원격지구매시스템」에 회원으로 등록한 가맹점

제 3 조(신용판매 범위)

이 특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“갑”의 회원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들이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격지구매 가맹점에서 결제하는데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4 조(신용판매 방법)

- ① “을”은 신용판매시 마다 “갑”이 인정하는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 승인 및 승인 취소를 받아야 한다.
- ② 거래승인은 반드시 물품 판매시에 받아야 하며 물품 판매시점과 거래승인 시점이 다를 경우 “갑”은 동 승인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 5 조(신용판매대금 청구 및 지급)

“을”은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승인을 받음으로써 카드사에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며 카드사는 동 거래승인 내역을 검증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매출일(승인일)로부터 3영업일에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.

제 6 조(가맹점 수수료)

“갑”은 “을”이 원격지구매 시스템을 이용한 매출에 대하여 1%의 가맹점 수수료를 징구한다. 단, 동 수수료는 "갑"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.

